행정안전부	보 도 자 료	작성과	재난관리정책과 지진방재관리과 복구지원과 재난구호과
	2017년 11월 20일 (월) 석간 (11. 20. 10:30 이후)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담당자	과 장 박용수 과 장 박병철 과 장 박성식 과 장 신지혜
		연락처	044-205-5110 044-205-5116

경북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

- 중앙안전관리위원회(위원장 : 국무총리)에서 건의안 의결 -

□ **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**(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)은 지난 15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이 오늘 아침 개최된 **중앙안전관리위원회**(위원장 : 국무총리)**에서 심의·의결**됨에 따라,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**건의하기로 하였다.**

○ 대통령 재가가 이루어지면 포항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된다.

□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.5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포하게 된다.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.

○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될 경우, 피해복구비 중 **지방비 부담액**의 **64.5%**를 **국고로 추가 지원**을 받고, 건강보험료 경감, 통신·전기요금 감면,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,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.

□ 지진 피해시설물에 대한 **신속한 안전점검**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**전문인력**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
○ 또한, 피해시설물 점검 완료 즉시 결과를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신속하게 안내하기로 하였다.

* 주택 점검결과 귀가 가능여부, 사용제한 필요 여부 등

□ 지진피해로 생활터전을 빼앗긴 이재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칸막이와 텐트를 설치하였고, 이재민들에게 명찰을 교부하여 관계자 이외의 **외부인 출입을 최소화**할 계획이다.

○ 아울러, 이재민들에게 세탁서비스와 목욕쿠폰을 제공하는 등 소소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.

□ **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**은 “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은 포항지역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어느 때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”이라면서, "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시설들에 대한 복구에 보다 탄력을 받을 것“ 이라고 밝혔다.

* (’16.9.12 경주지진)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건상정(9.22), 선포(9.23)

※ 참고 : 사생활 보호용 텐트 설치 사진

당 초	개 선

참고 1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

□ 도입취지

○ '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피해에 대한 **지자체의 행정적·재정적 부담 경감**을 위하여 도입

○ 사회재난에 한하여 적용하던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를 **'02년 태풍 루사를 계기로 자연재난까지 확대** 적용

□ 선포기준

○ **(법적근거)**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

○ **(자연재난) 시·군·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**(18~42억원)**의 2.5배**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

○ **(사회재난) 지자체 행·재정적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**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포

* 자연재난은 정량적(27회 선포), 사회재난은 정성적(7회 선포)

□ 지원내용

○ **(국고추가지원) 복구액 중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**(50~80%)

○ **(간접지원)** 건강보험료 경감, **통신·전기료감면 등 6개 항목 추가** 지원

* 지방세 감면, 국민연금 납부유예 등 8개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

□ 선포절차

지대본부장 요청 (중대본부장 인정) ⇨ **중앙안전관리 위원회**(국무총리) **심의** ⇨ **선포 건의** (중대본부장→대통령) ⇨ **선 포** (대통령)

참고 2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지원항목 [자연재난 15개 항목]

구분		지원항목	지원사항	주관기관	협조기관
일반재난지역(국고지원)	1	국민연금 납부예외	최장 12개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	국민연금공단	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
	2	지방세 감면 및 납기유예	재산세 등 감면 및 납기연장 * 대체취득시 취·등록세 면제(최장 6개월)	행정안전부	시·군·구 재난부서
	3	국세 납세유예	납부연장, 징수유예, 체납처분 유예 * 최장 9개월 연장	국세청	행정안전부
	4	복구자금 융자	농·어업시설 등 복구자금 융자 * 5년 거치 10년 상황 조건 등	국토부, 농림부, 해수부, 산림청, 중기청	시·군·구 재난부서
	5	지적측량수수료 감면	지적측량 수수료 50% 감면 *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	한국국토정보공사	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
	6	보훈대상 위로금 지원	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* 사망·주택전파 : 500만원 * 재산피해 1천만원 초과시 50만원 등	국가보훈처	행정안전부
	7	상하수도 요금 감면	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등 * 지자체 조례에 따름	환경부	시·군·구 재난부서
	8	농기계 수리 지원	농기계 유·무상 수리 * 지자체에서 농기계회사·수리업체와 지원·협조체계가 구축된 경우	농기계회사, 시·군·구 농업부서	농식품부, 행정안전부 시·군·구 재난부서
	9	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	징병검사·현역입영 등 기일연기 * 60일 범위 내	병무청	지방병무청 시·군·구 재난부서
특별재난지역(국고 추가지원)	10	건강보험료 경감	피해정도에 따라 30~50% 경감(3개월) * 인적·물적피해 동시발생시 6개월	국민건강보험공단	복지부, 행정안전부
	11	통신요금 감면	재난등급 1~90등급, 최대 12,500원	SKT·KT·LGU+	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행정안전부
	12	전기요금 감면	건축물 피해시 1개월분 면제·감면 * 멸실→면제, 파손→50% 감면	한국전력공사	시·군·구 재난부서
	13	도시가스요금 감면	피해 유형별(전파·반파·침수)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* (취사용) 전파·반파·침수 1,680원 * (취사·난방용) 전파 12,400원 반파·침수 6,200원	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	산업부 행정안전부
	14	지역난방요금 감면	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지원 * 기계실 멸실·파손·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* 열공급 중지일~재개전일 기본요금 전액 감면	한국지역난방공사 일반사업자	산업부 행정안전부
	15	병력동원 훈련 및 예비군 훈련 면제	병력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 면제 * 당해연도에 한함	병무청, 국방부	지방병무청 시·군·구 재난부서